

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안전보안관
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2 월 30 일

여 수 시 장 2022.12.30



여수시 조례 제1832호
붙임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1부.

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안전보안관의 정의) 이 조례에서 “안전보안관”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안전보안관의 위촉)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.

1. 재난·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
3.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, 학교,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
4. 재난·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
5.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

제4조(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)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, 시장은 안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.

제5조(대표단 구성)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, 안전

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.

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안전보안관의 활동)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
1.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
2.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
3.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
4.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안전보안관 활동 지원) ① 시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.

1.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경비
2.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, 보상금
3.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·워크숍에 필요한 경비
4.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8조(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)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

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, 안전 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.

1.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
2.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(移轉)하는 경우
3.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
4.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9조(표창)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「여수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